

의안번호	2203081
의 퇴 인	윤준병 의원
회 답 일	2024. 10. 4.
추계번호	24G30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분야 지방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 －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농어업분야에 적용되는 지방세 특례 감면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는 2025년 194.9억원, 2029년 239.9억원 등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1,074.5억원(연평균 214.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귀농인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 5년간 -144억원(연평균 -29억원)
 - 농어업인 직접 사용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연장: 5년간 -324억원(연평균 -65억원)
 - 한국농어촌공사의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 부동산 중 국가 등에 무상 귀속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연장: 5년간 -45억원(연평균 -9억원)
 - 농어촌 주택개량 취득세 감면 연장: 5년간 -153억원(연평균 -30.6억원)
 - 농지연금 담보농지 재산세 감면 연장: 5년간 -148억원(연평균 -29.6억원)
 - 국제선박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5년간 -89.7억원(연평균 -17.9억원)
 - 연안화물선 및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선박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5년간 -162억원(연평균 -32.4억원)
 -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안화물선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5년간 -8억원(연평균 -1.6억원)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5~2029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귀농인의 농지에 대한 감면 (제6조제4항)	-29	-29	-29	-29	-29	-144	-29
농어입인 등에 대 한 용자관련 감면 (제10조제2항)	-46	-54	-63	-74	-87	-324	-65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제13조제3항)	-9	-9	-9	-9	-9	-45	-9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제16조제1항)	-37	-34	-30	-27	-25	-153	-30.6
농지연금 담보농지 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제35조의2)	-22	-26	-29	-33	-38	-148	-29.6
국제선박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64 조제1항)	-17.9	-17.9	-17.9	-17.9	-17.9	-89.7	-17.9
연안화물선 및 외국 항로에 취항하는 선 박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 (안 제64조제2항)	-32.4	-32.4	-32.4	-32.4	-32.4	-162	-32.4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안화물 선에 대한 취득세 감 면 적용기한 5년 연 장(안 제64조제3항)	-1.6	-1.6	-1.6	-1.6	-1.6	-8	-1.6
계	-194.9	-203.9	-211.9	-223.9	-239.9	-1,074.5	-214.9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제4항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귀농인이 직접 경작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지, 농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농업용시설을 취득하거나, 농지 등을 취득한 사람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된 경우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의 50% 감면기한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4.12.31. → (개정안) 2029.12.31.	
2	안 제10조제2항 (농어업인 등에 대한 용자관련 감면 등)	- 농어업이 영농, 영림, 가축사육, 양식, 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 면제 기한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4.12.31. → (개정안) 2029.12.31.	
3	안 제13조제3항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면제 기한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4.12.31. → (개정안) 2029.12.31.	
4	안 제16조 제1항 (농어촌 주택개량 에 대한 감면)	-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4.12.31. → (개정안) 2029.12.31.	
5	안 제35조의2 (농업인의 노후생 활안정자금대상 농 지에 대한 감면)	- 농지연금 담보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4.12.31. → (개정안) 2029.12.31.	
6	안 제64조제1항 (해운항만 등 지원 을 위한 과세특례)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4.12.31. → (개정안) 2029.12.31.	
7	안 제64조제2항 (해운항만 등 지원 을 위한 과세특례)	-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화물운송용 선박과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4.12.31. → (개정안) 2029.12.31.	
8	안 제64조제3항 (해운항만 등 지원 을 위한 과세특례)	-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한 화물운송용 선박 중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4.12.31. → (개정안) 2029.12.31.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6조제4항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2	안 제10조제2항 (농어업인 등에 대한 용자관련 감면 등)	○	
3	안 제13조제3항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	
4	안 제16조 제1항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	
5	안 제35조의2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	
6	안 제64조제1항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국제선박에 대한 과세특례	○	
7	안 제64조제2항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화물운송용 선박 등에 대한 과세특례	○	
8	안 제64조제3항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한 화물운송용 선박 중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이 2024년 중 통과될 것을 전제로 개정안의 세수효과는 2025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가정
- (안 제6조제4항) 귀농인의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실적은 최근 5년('18~'22년)간의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통계청 「귀농어·귀촌인 통계」의 귀농가구수 추이를 볼 때, 귀농가구수의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음
 -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취득한 농지, 임야, 농업용 시설 혹은 해당 농지 등의 취득자가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귀농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므로 귀농가구수의 증감 여부는 귀농인이 취득한 농지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최근 5년간 귀농가구수의 증감추이 또한 일정하지 않음
- (안 제10조제2항) 농어업인의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실적은 최근 5년의 증가추세가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최근 5년('18~'22년) 연평균 실적 증가율: 17.3%
- (안 제13조제3항) 한국농어촌공사가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서 취득하는 부동산 중 국가 등에 귀속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실적은 2022년 감면액 9.4억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안 제16조제1항)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2년 감면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2018~2022년 감면액 연평균 증감률에 따라 매년 감면액이 감소한다고 가정하여 추계
 - 감면실적이 감소하는 추세로, 향후에도 감면액이 감소할 것으로 가정
 - 2018~2022년 농어촌 주택개량 취득세 감면 연평균 증감률: -9.9%
- (안 제35조의2) 농지연금 담보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제35조의2)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향후 '19~'23년 농지연금 누적 가입자수 연평균 증가율에 따라 매년 감면액이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추계
 - 동 감면에 대한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농지연금 누적 가입자수 증가에 따라 감면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가정
 - 2019~2023년 농지연금 누적 가입자수 연평균 증감률: 14.1%
- (안 제64조제1항) 국제선박용 선박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최근 5년(2018~2022년)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안 제64조제2항)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한 화물운송용 선박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취득세의 경우 최근 4년간(2019~2022년) 연평균 감면실적이, 재산세의 경우 최근 5년(2018~2022년)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취득세의 경우 2019년 이후 감면실적이 유사한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2019년 이후의 실적의 평균치를 반영하여 추계
- (안 제64조제3항)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한 화물운송용 선박 중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을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감면실적이 발생한 최근 3년(2020~2022년)의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귀농인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안 제6조제4항)

(1) 제도 개요

- 귀농인이 직접 경작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지, 농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농업용시설을 취득하거나, 해당 농지 등을 취득한 사람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된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
 - 귀농인이란 농촌 이외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1년 이상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며, 귀농일 이전 1년간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5항)
 - 2021년 세법개정으로 감면 대상이 되는 자경농민 취득 농지 범위가 확대(직접 경작 목적→직접 경작 또는 사용할 목적의 농지)되고 취득세 감면 요건이 변경(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지 등을 취득한 경우→농지 등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된 경우도 포함)되었음

(2) 추계방법

□ 최근 5년간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최근 5년간 평균 감면실적: 28.8억원

- 귀농인의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감소하다가 2021년, 2022년 다소 증가하는 추세이나 그 증감추세가 일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전년 대비 증감률도 △18.2%~13.1%로 불규칙함

[표 2] 귀농인의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 추이: 2018~2022년

(단위: 억원)

	2018	2019	2020	2021	2022
감면실적	32.4	26.5	26.0	29.4	30.0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년도

- 귀농가구 수의 증감 여부는 귀농인이 취득한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최근 5년간 귀농가구수의 증감추이 또한 일정하지 않음

[표 5] 귀농가구수: 2018~2022년

(단위: 가구)

	2018	2019	2020	2021	2022
귀농가구수	11,961	11,422	12,489	14,347	12,411

자료: 통계청, 「귀농어·귀촌인 통계」 각 년도

(3) 추계결과

- 귀농인의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수는 2025~2029년간 총 144억원(연평균 28.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4]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5~2029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귀농인의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 연장(제6조 제4항)	-28.8	-28.8	-28.8	-28.8	-28.8	-144.0	-28.8

나. 농어업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안 제10조제2항)

(1) 제도 개요

□ 농어업인 등이 영농, 영림, 가축사육, 양식, 어획 등에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를 면제

- 일반적인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는 다음과 같음
 - (사업소분) 기본세액 + 사업소 연면적 기준 부과
 - * 기본세액: (개인) 5만원, (법인) 출자금액에 따라 5~20만원
 - ** 연면적에 대한 세율: 1㎡당 250원
 -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총액의 0.5%
- 2010년 지방세제 개편 이후 현재까지 감면요건·감면율 등 제도변화 없음

(2) 추계방법

□ 2022년 실적을 기준으로 최근 5년의 증가추세가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농어업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감면실적은 2018년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최근 5년('18~'22년) 연평균 실적 증가율은 17.3%

[표 11] 농어업인 직접 사용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감면 추이: 2018~2022년

(단위: 억원)

	2018	2019	2020	2021	2022
감면실적	15	16	19.5	23.5	28.4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년도

- 다만, 행정안전부는 주민세 감면에 관한 요건·대상 등의 제도개편도 없었으며, 지역마다 연도별 증감 추세 또한 불규칙하여 특정 원인으로 인해 최근 주민세 감면

실적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함

(3) 추계결과

- 농어업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수는 2025~2029년간 총 323.5억원(연평균 64.7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6]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5~2029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농어업인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기한 연장(안 제10조제2항)	-45.8	-53.8	-63.1	-74.0	-86.8	-323.5	-64.7

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안 제13조제3항)

(1) 제도 개요

-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한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 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

(2) 추계방법

- 2022년 실적 9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2018년 2.8억원에서 2021년 4억원으로 안정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22년은 9억원으로 증가
 - 2018~2021년까지 감면액이 유사한 규모로 유지된 점을 감안하여, 2022년 이후에도 감면액은 유사한 규모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표 11]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한 부동산 중 국가 등에 귀속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추이

(단위: 억원)

	2018	2019	2020	2021	2022
감면실적	3	3	3	4	9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년도

(3) 추계결과

-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한 부동산 중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등에 귀속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 수는 2025~2029년간 총 45억원(연평균 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8]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5~2029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한 부동산 중 국가 등에 귀속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13조제3항)	-9	-9	-9	-9	-9	-45	-9

라.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안 제16조제1항)

(1) 제도 개요

- 농어촌 주택개량 대상자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주택개량 대상자가 취득일 기준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본인 및 가족이 거주할 목적으로 연면적 150㎡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8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액 감면
 -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범위
 - 신규 농어촌마을 건설사업, 농어촌마을 재개발사업, 농어촌 수질오염 방지사업,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빈집 정비사업, 농어촌 임대주택 공급, 농어촌 주택개량 등
 - 2019년부터 감면요건을 강화하고 감면액 상한을 도입하였으며, 2022년부터는 과밀억제권역 내 주택취득시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신설

[표 9]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항(안 제16조제1항) 개정사항

	2018년 이전	2019년	2022년
거주요건	해당 지역 거주자	취득일 현재 해당 지역 거주자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 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범위	전용면적 100㎡이하의 주택 (바닥면적 7배 이내의 부속토지 포함)	연면적 15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좌동)
감면내용	취득세 면제	280만원 한도 내 감면	(좌동)

(2) 추계방법

- 2022년 감면실적을 기준으로, 최근 5년의 감소추세가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은 2018년 78억에서 2022년 51억원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며, 최근 5년('18~'22년) 연평균 실적 감소율은 9.9%
 - 농어촌에 거주하는 인구가 감소하고, 주택개량 사업이 정체되면서 관련 감면실적은 지속적으로 감소

[표 10]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 2018~2022년

(단위: 억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18~'22년 연평균 증감률
취득세	78	76	68	59	51	-9.9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년도

(3) 추계결과

-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함에 따라 취득세는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153억원(연평균 30.6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취득세, 2025~2029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16조제1항)	-37	-34	-30	-27	-25	-153	-30.6

마. 농지연금 담보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제35조의2)

(1) 제도 개요

□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하여 공시가격 6억원에 해당하는 세액을 한도로 재산세 감면

○ 일반적으로 농지는 재산세 저율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공시가격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은 29.4만원 수준

－ 6억원 × 70%(공정시장가액비율) × 0.07%(농지 분리과세 세율) = 29.4만원

(2) 추계방법

□ 2022년 감면실적을 기준으로 향후 2019~2023년 농지연금 누적 가입자 연평균 증가율 14.1%에 따라 감면실적이 증가한다고 가정

○ 농지연금 담보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실적은 2018년 7억에서 2022년 15억원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

－ 지속적인 농지연금 누적 가입자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농지연금 담보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실적이 증가하고 있음

[표 12] 농지연금 담보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실적 추이: 2018~2022년

(단위: 억원)

	2018	2019	2020	2021	2022
감면실적	7	9	11	13	15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년도

○ 향후 농지연금 담보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액은 농지연금 누적 가입수 증가에 따라 매년 14.1%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

[표 13] 농지연금 누적 가입자수: 2019~2023년

(단위: 건, %)

	2019	2020	2021	2022	2023	'19~'23년 연평균 증감률
가입자수	14,492	17,098	19,178	21,708	24,590	14.1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제출자료

(3) 추계결과

- 농지연금 담보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함에 따라 재산세는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148억원(연평균 29.6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4]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재산세, 2025~2029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농지연금 담보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35조의2)	-22	-26	-29	-33	-38	-148	-29.6

바. 국제선박용 선박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과세특례(안 제64조제1항)

(1) 제도개요

-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율(표준세율 2.02~3%)에서 2%p를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50%를 감면
 - 다만, 선박의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정함

(2) 추계방법

- 최근 5년(2019~2022년)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동 감면에 따른 최근 5년(2018~2022년)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실적은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아 최근 5년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재산세 감면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됨에 따라 매년 취득세 감면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일정하게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지 않음

[표 15] 국제선박용 선박에 대한 지방세 감면실적 추이: 2018~2022년

(단위: 억원)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감면액
취득세	9.0	8.9	21.1	34.8	15.9	17.9
재산세	0.05	0.07	0.07	0.04	0.02	0.05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3)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국제선박 등록을 위한 선박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수는 2025년 17.9억원, 2029년 17.9억원 등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89.7억원(연평균 17.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6]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지방세, 2025~2029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국제선박용 선박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64조제1항)	-17.9	-17.9	-17.9	-17.9	-17.9	-89.7	-17.9
취득세	-17.9	-17.9	-17.9	-17.9	-17.9	-89.5	-17.9
재산세	-0.05	-0.05	-0.05	-0.05	-0.05	-0.25	-0.05

사.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한 화물운송용 선박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과세특례(안 제64조제2항)

(1) 제도개요

-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화물운송용 선박과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화물운송용 선박 및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표준세율 2.02~3%)의 2%p를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
 -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운송용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50% 감면

- 과세기준일 현재 외국항로취항용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해당 선박의 취득일 이후 해당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추계방법

- 취득세의 경우 최근 4년간(2019~2022년) 연평균 감면실적이, 재산세의 경우 최근 5년(2018~2022년)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취득세) 2018년 49.7억원의 감면실적을 기록한 후 2019~2022년에는 감면실적이 20.9~25.0억원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최근 4년(2019~2022년)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재산세) 동 감면에 따른 최근 5년(2018~2022년) 재산세 감면실적은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아 최근 5년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재산세 감면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운송용 또는 외국항로취항용에 사용되는 선박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됨에 따라 매년 취득세 감면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일정하게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지 않음

[표 17]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한 화물운송용 선박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실적 추이: 2018~2022년

(단위: 억원)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감면액
취득세	49.7	22.5	20.9	25.0	22.1	(5년 평균) 28 (4년 평균) 22.6
재산세	10.5	9.5	10.5	9.4	9.1	9.8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3)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국제선박 등록을 위한 선박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수는 2025년 32.4억원, 2029년 32.4억원 등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162억원(연평균 32.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8]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지방세, 2025~2029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한 화물운송용 선박 등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64조제2항)	-32.4	-32.4	-32.4	-32.4	-32.4	-162	-32.4
취득세	-22.6	-22.6	-22.6	-22.6	-22.6	-113	-22.6
재산세	-9.8	-9.8	-9.8	-9.8	-9.8	-49	-9.8

아.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운송용 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안 제64조제3항)

(1) 제도개요

-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한 화물운송용 선박 중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표준세율 2.02~3%)의 2%p를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
 - 단,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를 추징

(2) 추계방법

- 최근 5년간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을 살펴보면, 2018년, 2019년에는 감면실적이 없음

[표 19]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운송용 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 추이: 2018~2022년
(단위: 억원)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감면액 (‘20~’22년)
감면건수	-	-	8	12	8	-
감면액	-	-	1.3	1.9	1.5	1.6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 감면실적이 발생한 최근 3년(2020~2022년)간의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세수효과를 추계함
 - 최근 3년간 연평균 취득세 감면실적: 1.6억원

(3)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 대한 취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수는 2025년 1.6억원, 2029년 1.6억원 등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8억원(연평균 1.6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20]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취득세, 2025~2029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화물운송용 선박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64조제3항)	-1.6	-1.6	-1.6	-1.6	-1.6	-8	-1.6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최천규	백경엽
세제분석2과	장설희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천규	02-6788-4838	choi1009@assembly.go.kr